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인식 분석을 통한 자격제도 개선방안★

김일곤*

요 약

이 연구는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실증적으로 연구되어지지 않았던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중 자격제도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다.이를 통하여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나타난 제 문제들을 질적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변보호사 실기평가위원의 기술평가 능력 향상 모색이다. 둘째, 영상판독 시스템의 도입이다. 셋째, 모든 자격시험 점수 및 이의제청 내용 공개화이다.

Improvement Plan to the Certification System thorough Awareness Analysi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Examiner's

Il Gon Kim*

ABSTRACT

This study is improvement plan to the Certification System thorough awareness analysi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It's understanding what problems of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by making a qualitative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kill upgrade who evaluation committee's, Second, introduction of technology what imagery interpretation system, Third, a public offering of examination result and a formal objection.

Key words : Private Security Guard, Private Security, Crime, Certified Security Certification, Security Industry

접수일(2015년 2월 12일), 수정일(1차: 2015년 2월 27일), 게재확정일(2015년 2월 28일)

★ 본 논문은 2014년도 12월 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의 발표 자료를 수정·가필한 논문임.

* 동아대학교/경찰경호 학과

1. 서 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된 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까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2012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1]. 이러한 범죄의 증가는 안전에 대한 수요증가를 불러일으키고 그로인해 민간경비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민간경비관련 산업은 도입초기였던 1950년대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발전 과정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하였고, 특히 다양하고 많은 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 또는 자격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민간경비 산업과 관련 된 인적 자원의 자격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관련 국가공인 자격은 1995년 12월 30일 경비업법(법률 제5124호)개정으로 도입된 경비지도사 제도와 2012년 국가공인 자격으로 승인된 신변보호사 자격 제도이다. 1997년 자격기본법의 제정으로 민간자격증은 홍수처럼 범람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자격증이 발행되었다. 다만 우리 민간경비와 관련된 자격제도는 취약하고 그나마 개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여전히 관리·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2].

따라서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습득한 다양한 이론적 지식과 고도의 교육훈련을 바탕으로 시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과 함께 상호 협력을 통해 개인의 재산과 생명보호라는 기본적 목적에 충실하여 범죄예방과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실제 해당 업무수행에서 신변보호사 자격이 요구되어지고 활용되어지는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민간경비의 자격제도 중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국가공인화 유지 및 자격의 효율적 활용성과 관련하여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배경

2.1 신변보호의 개념과 자격제도

2.1.1. 신변보호의 개념

신변보호에 대한 가장 일반적 개념은 경비업법 제2조(정의) 제1호의 해석으로써 신변보호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영위하는 행위를 신변보호업무라 한다. 또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변보호를 위한 행위를 영위함에 있어 수반되는 제반 활동 중 '경호'와 '경비'라는 개념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들 용어사용에 대한 개념 해석을 해보면, 신변보호활동 및 호위적 성격이 주(主)가 되는 업무수행활동을 '경호'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고, 경호대상자의 생명 또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특정한 시설 및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활동을 '경비'의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3].

2.1.2.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민간경비는 치안서비스의 공급 주체인 경찰과 함께 상호 협력과 역할분담을 하는 또 하나의 치안주체로서 그 기본적인 목적인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담당하고 있다[4]. 그 중 신변보호는 신변의 불안감을 갖게되어 신변보호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호대상자의 주변에 경호원이 함께함으로서 경호대상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극히 개인적 이면서도 철저한 안전 보장이 필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민간경비업자들의 대표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처는 물론 관련 자격제도 또한 전무한 상태였기에 실제로 경비업무를 담당할 인적자원에 대한 고도의 전문 교육과 훈련을 바탕으로 한 자격 제도가 절실히

요구 되었다[5].

따라서 신변보호를 포함한 민간경비가 본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경비원들이 자질과 능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비업체는 우선 재능과 능력, 전문성을 가진 경비원들을 선발하고 나아가 끊임없는 교육·훈련 및 조직학습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는 민간경비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나아가 전문자격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2].

민간경비는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 안전 담당자로서 전문성과 공신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자격증 등을 통한 전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고객들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 경비원이 있다면 그 중에서 검정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호할 것이다. 자격증은 경비요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및 자질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받은 결과이다. 즉, 자격증은 고객에게 심리적 안정과 신뢰감과 든든함을 줄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그 회사자체를 신뢰하고 선호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2].

2.1.3.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현황

자격제도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해서는 최초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시행되었던 2006년 제1회 시험과목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론과목은 법학개론·경찰학·경호학·민간경비론·경비업법 중에서 선택 한 2개의 과목에 대하여 응시하였다.

이론과목 2개 과목에 대한 평가는 학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A학점, 80점 이상인 경우 B학점, 70점 이상인 경우 C학점,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D학점으로 산정하였다. 실기과목은 경호무도와 체포·호신술로써 경호무도 50점, 체포·호신술 50점 합계 총100점 만점으로 산정하였다[6].

응시 접수 및 합격률에 관해 2006년도 제1차 자격제도는 총 821명이 접수하여 805명이 응시하여 763명(94.8%)이 합격하였으며, 2007년도 제2차 자격제도는 총 1,220명이 접수하여 1,133명이 응시하여 1,090명(96.2%)이, 2008년도 제3차 자격제도는 총 1,411명이 접수하여 1,308명이 응시하여 1,204명(96.2%)이 합격하였다. 그러나 자격제도 공인신청을 한 결과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이 검정으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 후 이러한 지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 1>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 합격자 수가 급격히 줄어 제4회에서는 1,166명이 응시하여 634명(60.4%)이, 2010년도 제5회에서는 707명이 응시하여 501명(80.6%)이, 2011년도 제6회에서는 806명이 응시하여 427명(58.2%)이, 2012년도 제7회에서는 861명이 응시하여 534명(68.1%)이, 2013년도 제8회에서는 935명이 응시하여 265명(28.3%)이, 2014년도 제9회에서는 452명이 응시하여 196명(43.4%) 이 합격하였다. 한동안 응시자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국가공인화 이후 증가추세로 전화되었다.

2.2. 선행연구 검토

정지운(2007)[7]은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시행에 따른 자격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이 자격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상철 외(2008)[8]는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자격제도 주관단체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격제도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신상민(2009)[9], 송영남 외(2010)[10]는 신변보호 업무수행에 있어 경호무도의 적용과 기존의 무도교육 훈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안황권(2011)[2]은 신변보호사 제격제도의 필요성과 본 자격제도를 치러 오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신변보호사 자격활용과 관련하여 김일곤(2012)[5]은 신변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득한 자격증의 활용에 대해 고찰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1>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현황(2006-2014)

등급 / 회차	일자	2급				3급				합계			
		접수	응시	합격	합격률	접수	응시	합격	합격률	접수	응시	합격	합격률
2006	11.25	293	286	274	95.8	528	519	489	94.2	821	805	763	94.8
2007	11.03	926	868	835	96.2	294	265	255	96.2	1,220	1,133	1,090	96.2
2008	11.15	1,308	1,209	1,109	91.7	103	99	95	96.0	1,411	1,308	1,204	92.0
2009	11.14	1,166	1,050	634	60.38	·	·	·	·	1,166	1050	634	60.4
2010	11.06	707	622	501	80.55	·	·	·	·	707	622	501	80.55
2011	11.05	806	734	427	58.17	·	·	·	·	806	734	427	58.17
2012	11.10	861	784	534	68.11	·	·	·	·	861	784	534	68.11
2013	11.09	1,111	935	265	28.34					1,111	935	265	28.34
2014	11.08	471	452	196	43.7					471	452	196	43.7
합계		7,649	6,940	4,775	69.22	925	883	839	95.47	8,574	7,823	5,614	69.14

자료: (사)한국경비협회, 2014년도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내부자료.
주) 2009년도 제4회부터 등급을 통합하여 실시하였음.

이상훈은(2014)[11]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해 첫째, 현재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정답을 공개 및 이의신청절차 검토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선행연구의 일반적 내용은 외국의 민간경비 제도 소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 신변보호 무도 교육훈련, 신변보호사 자격취득 후 자격 활용실태 등이 고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신변보호사 자격을 실제로 활용하고 자격 취득자를 고용하는 신변보호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신변보호사 자격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변보호사 자격증이 실제 신변보호업자 및 업무에서 현실성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참여자

3.1 연구방법

질적연구방법으로는 문화기술지(집단, 개인의 문화적 행동 기술), 사례연구(사례에 대한 심층 연구), 전기(개인의 삶에 대한 자세한 묘사), 현상학(경험의 본질 기술), 근거이론(이론 또는 이론적 모델 제시) 등이 있다[12]. 이 연구는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알고자하는 질문을 개방형식으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및 이의신청 질의서 분석과 설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에 대해 느끼고 있는 바를 질적 분석 과정(자료 전사-코딩-범주화-주제결정)으로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와 관련해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탐색적 연구로서 질적 연구방법[1]을 선

1) 일반화 되지 않은 연구 주제해 대하여 탐색적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적 연구방법이 양적 연구방법에 비하여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연구 이전에 연구

택하여 접근하였다. 면담은 연구대상 질문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탐색적 접근이라는 특성상 면담 중 연구자가 기대하지 못하는 내용의 발견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와 평소 친분이 있는 대상자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형태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격시험 이후 (사)한국경비협회에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질의 내용 분석과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도 병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녹음한 내용을 전부 녹취하고 분석을 끝내고 질문을 준비해서 참여자를 만나 녹취한 내용을 전사하는 과정이었다. 이점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자는 자료 입력 부분에서는 한글의 경우 'Byvoice 2002 프로 그램을 응용해 질적 연구 인터뷰 자료를 문서화 하였고, 방대하고 체계가 전혀 잡혀 있지 않는 분석 프로그램은 Nvivo10을 사용해 분석 하였다.

NVivo10을 활용하여 구축한 하위노드(Child node)와 상위노드(Parent node)를 단계적으로 형성하여 노드 간의 관계를 구조화해갔으며, 하위범주에서부터 상위범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범주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데이터를 일반화 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3.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참가대상자를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2)]에 의해 선정하였다. 특히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변보호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자격증의 실제 활용성에 관련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표집기준으로 정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서울 및 경기에 위치하고 있는 신변보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1:1 심층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시간제한 없이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다음<표 2>는 연구 참여자의 세부사항이다.

<표 2> 연구 참여자

항목	세부사항
연령	20세 이상
성별	남
참여인원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 16명
수집자료 유형	개인 심층 인터뷰 및 이의신청 질의서

4. 결과분석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분석 한 결과 <표 3>과 같이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을 요인화 하여 범주별로 정리할 수 있었다.

<표 3> 신변보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자격제도 시험에 대한 인식

상위범주	하위범주
실기평가위원의 객관성 결여(4)	실기동작 미숙지 실기 평가위원의 배점 편차 실기 평가위원의 전문성 주관적 판단
실기점수 기준 미비(3)	구분동작 배점 기준 연속동작 배점 기준 감점요인 불분명
실기심사 점수 공개(3)	구분동작 점수 공개 연속동작 점수 공개 채점표 전체 공개
자격시험 운영의 공정성 확립(2)	이의신청 공개화 실기시험 형식 변경

설계가 완전히 결정되는 양적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는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연구 작업에 대한 사항들이 구체화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13].

2) 질적 연구의 표집 방법 중 하나로서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풍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이다[14].

4.1. 실기평가위원의 객관성 결여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은 자격시험 응시당시 실기평가위원의 객관성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들이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이유로는 실기평가위원의 실기동작 미숙지, 실기 평가위원의 배점 편차, 실기 평가위원의 전문성, 주관적 판단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실기 심사시 심사위원은 응시자들이 심사평가위원의 객관성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고 일관된 심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들의 실기평가위원의 객관성 결여에 대한 내용이다.

▲ 실기 시험 구분 동작을 할 때,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동작을 지시하고, 동작을 아시는 건지....저희 실기 감독관님들이랑, 다른 위치에 있는 감독관님들이랑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감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최성욱, 13, 3-6)

▲ 제가 긴장을 해서 동작이 틀렸거나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예 모르진 않는데 점수가 저렇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면은 그럴까요 책에 나와 있는 평가 기준도 보고 동영상도 수차례 반복하여 봤는데 저정도 점수 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뭔가 있는거 같습니다.(이성주, 8, 6-8)

▲ 실기를 마치고 나왔을시 총감독이라는 분께서는 보시곤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40점이라면 기본정도 인거 같은데 너무 사람마다 주관적이든지 너무 높게 기준을 잡은거 아닌지 모르겠네요...(배범수, 3, 5-9)

4.2. 실기점수 기준 미비

다음으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은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당시 실기점수 기준 미비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들은 실기시험을 응시함에 있어 구분동작 배점 기준, 연속동작 배점 기준, 감점요인이 불분명하여 자신의 실기시험 성적에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배점기준에도 의문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협회 회원사 직원이라 협회에서 주관한다 해서 직원들 참가했는데..도대체가 실기 점수의 신뢰성이 없네요... 직원 중 한명은 구분동작은 실시하고 연속동작은 포기했는데.. 무도 가산점 2점 포함해서 3.33점이 나왔습니다. 실기 채점표에 구분동작 최저 점수 합이 10점인데 어떻게 무도 가산점 포함해서 3.33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연속동작 포기로 0점 받는다 쳐도 구분동작은 최저 12점 이상은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실기점수의 신뢰성이 전혀 없습니다.(이진혁, 9, 4-6).

▲ 틀린데는 하나도 없고 잘했는데 구분동작과 연속동작이 스피드가 비슷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구분동작은 구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끊어서 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전 구분동작은 20가지 동작 중 한 동작 한 동작 부르면 그대로 시연하는 것 인줄 알았습니다. 심사자님 말씀대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서 구분해서 동작을 안 한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20가지 동작을 다 숙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심사자님 말씀대로 틀린 곳도 없었는데 단지 하나 둘 구분을 안지어서 했다고 점수를 너무 낮게 주시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이호천 10, 9-11)

▲ 무슨 기준인건지..실기 점수가 26점대가 나왔네요..잘했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어설프게라도 50점대는 나올거라 생각했는데..실기 점수의 기준이 대체 뭔지요..?(이진혁, 9, 8-11)

▲ 동영상대로 나온 대로 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가면 갈수록 룰은 계속 바뀌고 그럼 앞에 한사람들은 그냥 실험쥐마냥 그냥 희생된 겁니다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데 계속 룰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도 그렇습니다.(안대화, 5, 10-13)

4.3. 실기심사 점수 공개

다음으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은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당시 실기점수 공개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들은 실기시험을 응시함에 있어 구분동작 점수 공개, 연속동작 점수 공개, 채점표 전체 공개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인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점수 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 저희가 신변보호사 지도하는 분의 가르침 아래 시험치기 2주 동안 실기연습을 했고 분명히 시험장에서도 실수 없이 완벽히 실기를 했는데 실기가 100점중에 44점이 나왔다는 게 정말 의문입니다. 점수 채점표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혹시 번호가 잘못 매겨 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하정석, 15, 4-7)

▲ 제가 시험을 치고 난 후에 듣기로 실기 동작이 바뀌었고 그대로안하면 감점이라고 들리더라고요 어깨나 멱살을 잡을 때 동영상에선 같이 빠졌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힘줘서 밀어야하고 밀 때 빠져야한다고 들었고 칼도 자세잡고한번 기합 찌르기 전에 또 기합 넣는 걸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응시자라 그런걸 전달 받지 못한 저는 동영상속 손동작, 발동작 기합 다 안틀리고 그대로 했는데 그러면 필기에서 떨어진겁니까? 애초에 감독관이 실기동작을 직접 바꾼 건지 아니면 미리 바뀐건지...점수가궁금합니다.(박승훈, 2, 1-6)

4.4. 자격시험 운영의 공정성

다음으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은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당시 자격시험 운영의 공정성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들은 실기시험을 응시함에 있어 실기시험 운영상 필요한 이의신청 공개화, 실기시험 형식 변경에 대하여 의문과 공개요청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변보호사 시험은 모든 것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제기 신청게시판은 말 그대로 시험을 친 수험자들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만큼 투명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골라서하는 행동, 비공개로 모두 돌려버리는 행동 전부 투명하다 보여지지가 않네요.(홍승민, 16, 11-14)

▲ 실기가 동영상이랑 다르더라구요 시험치고 나왔는데 바뀌었다는 공지 다른데서 우연히 들었는데 일반으로 시험 치는 사람은 보고 배울게 동영상뿐인데 동영상이랑 시험방법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해여...(박승훈, 2, 7-8)

▲ 듣기로는 저희학교 경찰행정과 교수님들이 다 시험감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되는 상황입니까? 저희과보다 경찰행정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시험을 응시했는데 저희과 2명 붙었습니다. 그리고 경찰행정과 7명이나 붙었다고 합니다.물론 개개인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재대로 안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감독관 전원이 경찰행정과 교수님이였던게 사실이라면 자기과 학생들에게 더 잘 봐줬을거 같습니다.(안대화, 5, 15-19)

5. 결 론

이 연구는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실증적으로 연구되어지지 않았던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중 자격제도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자격시험 응시 이후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에 대해 일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분석에 의해 밝혀진 주요 범주로는 실기평가위원의 객관성 결여, 실기점수 기준 미비, 실기심사 점수 공개, 자격시험 운영의 공정성 확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이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개선해야할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화 시키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신변보호사 실기평가위원의 기술평가 능력 향상 모색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은 자격시험 응시당시 실기평가위원의 실기동작 미숙지, 실기 평가위원의 배점 편차, 실기평가위원의 전문성, 주관적 판단이라는 객관성 결여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이 국가공인화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변보호사 실기평가위원 연수를 자비로 신청자에 한하여 공인 무도 4단 이상의 유단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우수한 신변보호사 실기평가위원 양성을 위해 이 같은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한 단발적 실기평가위원 양성 교육은 교육에 참여했던 참가자의 역량에 따라 기술의 이해, 숙지 등에 있어 편차를 발생케 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심사에 있어 주관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매년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실기평가위원 선발시 충분한 소양을 갖춘 평가위원을 선발하기 위해 무료로 협회주도의 연수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다수가 연수 참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 우수한 실기평가위원을 선발하여 인력풀로 관리하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상판독 시스템의 도입이다. 사람에 의해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을 평가하는 일은 아무리 많은 학습과 연습을 수행한다 하여도 완벽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매우 빠른 순간의 움직임일수록 그 동작에 대한 평가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동작에 사람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종종 오류를 발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판단의 오류를 재고하기 위해 우리 주위의 많은 스포츠 등에서는 영상판독 시스템을 자주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태권도, 축구, 펜싱, 육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스포츠는 영상을 녹화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이 영상을 다시 재생하여 판독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초에 판단한 결과를 번복하는 경우도 있다. 즉,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에 있어서도 실기평가 동작을 평가 또는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의 실기평가 동작을 녹화하여 이의제청시 실기심사 재평가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면 보다 신뢰성이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모든 자격시험 점수 및 이의제청 내용 공개화이다. 2013년도 제1회 국가공인 시험 실시 이후 많은 응시자들이 자신의 시험성적 및 감점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다. 실제로 다양한 국가공인 시험들이 자격시험 종료 후 답안을 공개하거나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은 작년부터 이러한 정보공개를 시작하고 있으나 이의 제청에 의한 감점요인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의 성적은 모두 공개함과 동시에 자신의 성적에 확인 또는 이의가 있는 응시자들이 감점 사유 등에 대하여 이의 제청할 경우 현재 홈페이지상 비공개로 설정된 부분을 누구나 확인하고 읽을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이 더욱더 투명하고 완벽한 자격검정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자격은 교육과 더불어 노동시장을 연계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매개이다. 때문에 수많은 자격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업종에서 제대로 우대받지 못하고 고용의 기회에서 제외 된다면 이는 자격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자격으로 인식되어 자연히 도태 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신체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2014년 국가공인 인증 제2회를 맞이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명실상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며 아쉬웠던 점은 응시자들의 저조한 면담참여율과 이로 인해 한정된 연구 자료를 토대로 연구가 전개될 수밖에 없어 연구의 한계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1]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2] 안황권.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과제, 「정보보안 논문지」, 11(2): 25-33, 2011.
[3] 김태민. 「한국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4] 안황권. 「민간경비원인적자원관리론」. 인천: 진영사, 2012.
[5] 김일곤. 신변보호사 자격취득 학생들의 자격활용 인식에 관한 연구, 「정보보안 논문지」, 13(2): 45-54, 2012.
[6] 한국경비협회.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내부자료」, 2014.
[7] 정지운. 민간자격증의 의의와 전망-2006년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경호경비연구」, 13: 451-470, 2007.
[8] 이상철·안성조. 한국 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 및 발전방안 :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경호경비연구」, 15: 235-256, 2008.
[9] 신상민. 신변보호업무 무도교육훈련의 개선방안, 「대한무도학회지」, 11(2): 369-384, 2009.
[10] 송영남·김병찬. 민간경호원에 대한 경호무도교육 시스템 발전방안, 「대한무도학회지」, 12(3): 327-342, 2010.
[11] 이상훈.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학회지」, 14(6). 35-44, 2014.
[12] 조흥식, 「질적 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2011.
[13] 김영천.「질적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2007.
[14] Padgett, D. K., Qualitative Method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01.

[저자소개]

김 일 곤 (Kim, Il Gon)

2001년 용인대학사
2004년 일본오사카체육대학원 석사
2011년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학 박사
現동아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강의전담 교수

email : security@dau.ac.kr